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재개발 추진 시 조합이 의무적으로 건설하여 공공에 제공하는 임대주택의 인수가격 산정 시 인수자가 가산할 수 있는 항목을 인수자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에 적용되는 항목으로 정하는 한편,

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시·도지사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등록증 교부 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정보종합체계에 해당 업체의 등록기준 적합여부를 입력하도록 하고, 정비사업전문관리업정보종합체계의 원활한 구축 및 활용을 위하여 한국부동산원이 관련 행정기관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3조의2(재개발임대주택 인수 가격) 영 제68조제2항에서 “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”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.

1. 「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」 제9조제1항 각 호 (제6호는 제외한다)에 따른 비용
2. 「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」 별표 1의3 각 호에 따른 비용

제18조제3항 중 “등록부에 이를 기재하고”를 “등록부 및 법 제108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보종합체계에 이를 기재 및 입력하고”로 한다.

제20조제1항제5호 중 “자격 및 경력”을 “자격, 경력, 실적 및 교육이수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8조 및 제

20조의 개정규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13조의2(재개발임대주택 인수 가격) 영 제68조제2항에서 “국 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” 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.</u> <u>1. 「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」 제9조제1항 각 호(제6호는 제외한다)에 따 른 비용</u> <u>2. 「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」 별표 1의3 각 호에 따른 비용</u>
제18조(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등록절차) ①·② (생 략) ③ 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영 제81조 제1항 및 별표 4에 따른 정비사 업전문관리업자의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정비사업전 문관리업자 등록부에 이를 기재 <u>하고</u>, 신청인에게 별지 제15호 서식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등 록증(전자문서로 된 등록증을	제18조(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등록절차) ①·② (현행과 같 음) 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등록부 및 법 제108 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보종합체계에 이를 기재 및 입력하고</u>-----

포함한다)을 교부한다.	-----.
제20조(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보 종합체계의 구축·운영) ① 「한국부동산원법」에 따른 한 국부동산원(이하 “한국부동산 원”이라 한다)은 법 제108조제2 항 및 영 제96조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및 정비사업전문 관리업자에게 정비사업전문관 리업 정보종합체계의 구축 및 활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 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	제20조(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보 종합체계의 구축·운영) ① 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4. (생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5. 보유 기술인력의 수, 기술인 력별 <u>자격 및 경력</u> 에 관한 현 황	5. ----- -- <u>자격, 경력, 실적 및 교육</u> <u>이수</u> ----- --
6. · 7. (생략)	6. · 7. (현행과 같음)
② · ③ (생략)	② · ③ (현행과 같음)